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3,342,265	11,800,268
일반회계	372,435,643	11,173,069
특별회계	20,906,622	627,199
기타특별회계	20,906,622	627,199
상수도	15,063,353	451,901
의료보호사업	1,420,246	42,607
묘포장	61,000	1,830
주택사업	159,084	4,773
기반조성사업	40,767	1,223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3,040,240	91,207
기초생활보장기금	820,432	24,613
주민소득지원기금	301,500	9,04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92,02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